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23호)

2026. 9.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비	2
2.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9. 9.
3. 회 부 일 : 2026.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비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에 맞추어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u>아동·</u> <u>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u> <u>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u> <u>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u> <u>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u> <u>제924조의 친권상실신고 또는 같은</u> <u>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u> <u>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u> <u>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u> <u>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u> <u>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③ (생략)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u>검사는</u>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u>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 아동·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 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 ----- ----- ----- ----- ----- -----

현행	개정안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u>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u>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u>수사</u>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생략) 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 <u>성범죄사건을 담당하는 검사</u>-----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 ----- <u>수사, 공소</u>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법경찰관</u>----- ----- ----- ----- ----- ----- -----

현행	개정안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¹⁾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²⁾ 현행 법률의 내용 중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은 i)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ii)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한 영장의 청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집행만 가능하게 하며, iii)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상호 협력으로 대체하며, vi)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v) 검사의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의신청·재정신청권자 확대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2) 「공소청법 제정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8. 4. 공포, 10.2. 시행)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과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수사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등(제23조), 성범죄 수사 검사에 대한 증거보전의 청구 요청(제2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제31조) 및 검사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수사 사건의 통지(제38조) 등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권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공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는 검사의 업무범위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과 구별된다는 점을 명시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검사로 사건이 송치된 후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조치로 이해됨.

다만, 현행 제25조제4항, 제26조제8항³⁾에도 ‘수사 및 재판’을 규정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해당 법문에 ‘공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④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 규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조사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및 제28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u>조사</u>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 ----- ----- 조사, 사실 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u>조사</u>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검사, 법원----- ----- ----- -----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 ----- -----.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③ 수사기관, 검사, 법원----- -----

현행	개정안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피해아동·청소년에게 <u>조사</u>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u>조사</u>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⑤ (생략)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u>조사</u>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u>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 5.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 ----- -----. ② ----- <u>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u> ----- -----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u>	④ <u>사법경찰관</u> ----- ----- ----- -----.
⑤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하여야 한다.</u>	⑤ <u>사법경찰관</u> -----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u>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u> 관하여 준용한다.	② -----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u>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u>법원과 수사기관은</u>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u>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u> ----- ----- -----.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⁴⁾에서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채 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제기 여부 또는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고소인 등과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음.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배려(제25조),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의 영상 녹화 및 보존(제26조),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28조)에 관한 규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입법조치에 해당함.

다만, 현행법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제1호5) 등 ‘수사기관의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조사'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실관계 또는 면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제26조제2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및 영상녹화된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3항⁶⁾에 따르면 검사가 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 및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현행 제26조제2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에 한정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의 법체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조사'만 규정된 부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26조제2항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4

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② (생략)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하 생략)